

# 정 관

롯데정보통신주식회사

제정 : 2017년 11월 02일  
일부 개정 : 2019년 03월 29일  
일부 개정 : 2020년 03월 27일

## 【제1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롯데정보통신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LOTTE DATA COMMUNICATION COMPANY(약호 LDCC)**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 사업
4. 전자, 전기, 기계, 통신기기 및 관련기기 관련 사업
5. 정보시스템 개발, 통합, 운영 관련 사업
6. 기간통신사업 (전용회선, 구내통신망,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포함)
7. 부가통신사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포함)
8. 전자상거래, EDI, MRO, EPC 등 인터넷 관련사업
9. 온라인, 모바일 게임 관련 사업
10. 공인인증서 등록 대행 사업
1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12. 현금영수증사업
13. 전자금융 및 결제서비스 사업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14. 정보보호사업
15. 건설업 (정보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16. 조명사업 (일반조명, LED조명, 조명제어 솔루션, 설계/시공, 제조/유통 등)

17. 산업 제어사업 (발전, 화학, 환경 플랜트 계장제어사업, 설비와 관련되는 기기 및 부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설치공사 및 수리업)
18. 시설물 및 시스템 통합관제서비스 개발, 운영 서비스업
19.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및 교통 설비 사업(교통신호, 교통안전, 교통통제 등)
20. 항공관제사업 (장비설치, 유지보수, 운영 등)
21. 위치기반서비스업
22. 방송통신 미디어 사업관련 (음원 사업 포함)
23. 의료사업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관련사업 등)
24. 에너지 솔루션 사업 (에너지진단, 에너지 효율화(고효율기기), EMS, FMS, 신재생 에너지(PV), ESS, EV충전소, 설계/제안/시공, EPC 등)
25. 환경 사업 (컨설팅, 개발 등)
26. 물류관련 사업 (시스템 개발, 설계, 구축, 엔지니어링 등)
27. 광고업 (텔레마케팅, 광고대행업, 광고시설물 설치 및 운영업 등)
28. 노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업
29. 학술연구, 기술연구 및 용역 위·수탁업
30. 교육사업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 교육장 임대, 지식 및 인력개발 사업, 원격교육, 통신교육 등)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주차장 운영업
33. 수/출입업 및 대행업
34. 클라우드 서비스업 및 클라우드 컴퓨팅 중계 사업(CSB)
35. 데이터센터 사업 (상면, 통신, 관제, 부가 서비스 등)
36. 데이터센터 기반설비 사업 (컨설팅, 설계, 납품 및 구축, 통합 유지보수, 통합 관제, 안전진단 등)
37. 콜센터 종합 대행 서비스 (시스템, 인력 등)
38.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 기타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39. 개발 플랫폼(모바일 LEMP,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 등) 사업
40. 푸시 서비스(L.PUSH) 사업
41. 통합 메시징 서비스(L.Message) 사업
42.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데이터 분석 사업 등)
43. 선불카드 및 기타 선불 지급수단의 발행, 판매, 유통 및 중계업

- 44. 전기 및 태양광 발전, 전기 판매 관련 사업
- 45. 영상 기반 사업 (영상분석, 영상감지, 영상촬영, 영상인식, 영상처리 등)
- 46. 드론 활용 솔루션 및 서비스
- 47.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 48. 블록체인 기반 관리 서비스 (이력, 위변조 방지 등)
- 49.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및 관련 기기 판매 (자동화 설비, RPA, 챗봇, 음성봇 등)
- 50. 철도신호 관련 사업
- 51. 소방시설업
- 52. 편의점운영업
- 53.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 5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생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수출입, 임대 등 제반 사업 일체

### **제 3 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점, 출장소, 영업소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dc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일억)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0(오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는 설립시에 일천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 9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범위 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 업무 규정에 따른다.

#### **제 13 조 (전자주주명부)**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 14 조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 **제 15 조 (사채의 발행 위임)**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6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2항 규정에 의한 순서에 의한다.

##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는,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 **제 30 조 (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② 회사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2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임기를 연장한다.

###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 그러나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6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8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소집권자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당해 이사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 대한 통지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제 39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0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0조의2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 제 42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3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4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장 계 산】**

#### **제 45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6 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각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7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이월 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 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식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제 49 조의2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0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51 조 (세척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영업상 필요한 세척내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2 조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5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구 정관(2019년 03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